'경제자유구역법' 왜 폐기해야 하는가?

미리 가 본 경제자유구역법 동네

노동자들은 월차가 없고 주휴, 생리휴가가 무급입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파견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은 맘대로 노조를 만들 수 도 없고 단체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외국기업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아이들을 그곳에 있는 학교로만 보냅니다.
병원은 의료보험을 적용 받지 않는 값비싼 외국병원인데도 우리나라 부자들은 모두 그곳으로만 몰려갑니다.

기업들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과 환경관련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환경파괴를 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 조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페놀 사태가 발생 한다 해도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법천지 지상낙원'을 외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며 신바람이 났습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는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반민족, 반민중성!!!

선택 받은 특별한 지역(?)...경제특구

특정지역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초법적, 위헌적 성격을 띄고 있다.
노동, 환경, 교육, 보건의료, 조세징수 등 각종 희생을 담보로 한다.
그간 노동계의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조건을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다.

외국인 투자기업 = 국내기업

-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기본 목적.
- 현행 외자유치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율 1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 2002년 11월 현재 외국인 지분율 삼성전자 54.5%, 현대자동차 48.5, 삼성화재 51.9% 등이다. 즉 국내 모든 기업은 사실상 외국투자기업이 된다.

졸속행정, 난립하는 제도 특구 아닌 특구(?)

- 준비되지 않은 행정과 시행
- 외국인투자촉진제도와 경제자유구역법의 혼선과 충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 만연하는 정경유착, 관료주의, 부정부패, 투명하지 않은 기업관행 등을 없애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토록 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담긴 주요내용>

영 향	주 요 내 용
노동기본권 박탈 노동착취 강화	- 유급 월차휴가 폐지 -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종 제한과 기간 제한 면제 - 단체행동권 제한 -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환경파괴	-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 완화로 주요 환경관련법안 무력화 - 각종 관련 부담금 감면.
조세 징수권 포기	-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 감면 -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 지원 -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교육개방 공교육 붕괴	-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등 및 대학(원)의 설립을 허용 - 내국인의 입학 허용
의료 시장화	-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 자료 제공 IT노협>>